

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

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영동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년 8월 23일
영 동 군 의 회 의 장

1. 조 례 명 :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2. 개정이유
 - 필요시 심사위원회 심사 생략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3. 주요내용
 - 의원 수행에 따른 심사 생략 근거 신설(안 제4조)
4. 의견제출
 -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 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 - 다. 보내실 곳
 - 주 소 :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
 - 전 화 : 043)740-3035, FAX : (043)740-3039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입법예고 대상 : 「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」

○ 의견 제출자 성명(법인·단체명) :

○ 의견 제출자 주소 :

○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:

규칙안 내용	의견(찬·반 의견 및 사유)	비고

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의회 소속 공무원이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연수 수행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 대상)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4조(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 대상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의회 소속 공무원이 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연수 수행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심사로 같음할 수 있다.</u></p>